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이은정, 윤정호, 이상혁, 김유훈, 성웅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e-mail:ejlee@kei.re.kr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the Use of Environment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un Jung Lee, Jeong Ho Yoon, Sanghyuk Lee, Yuhoon Kim, Woong-Gi Su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요약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공간화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보전 가치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전국 단위의 평가지도로서 국토 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활용 방안과 그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계획적으로 보전 및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보전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지도이다(환경부, 2019). 총 70개의 평가항목(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으로 이루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지역구분(자연, 준자연, 인공)에 따라 차등된 등급이 부여된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70개의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을 통해 법제적, 환경·생태적,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부터 권역별 작성을 시작하여 현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도를 매년 2회 갱신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활용 분야가 제한적이다. 70개의 평가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최소지표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최종 1등급의 면적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으며, 등급별 관리 기준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들어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공간화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역할과 활용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토 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

토환경성평가지도의 사용 확대와 활용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과 그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추진 방안

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관리 기준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용 확대와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활용의 제도적 근거 및 등급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등급의 법적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과거 설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등급 기준은 표 1과 같으며,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강한 규제성을 띄는 등급 정의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정의도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등급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 평가등급의 활용 법적 근거와 함께 등급별 정의를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1등급 면적은 43%, 2등급 면적은 27%으로 전 국토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과거의 등급 기준을 적용 시 과도한 규제문 문제 제기 가능성이 높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최종 평가결과에 따른 현황을 표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표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관리 기준 개선(안)

	기존안	개선안
1등급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최우선 핵심보전지역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등급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으로, 보전검토가 필수적인 지역	법제적 측면이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호 및 보전에 준하는 지역
3등급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지역
4등급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	기개발지 주변지역으로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유도지역
5등급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 시 부분적인 보전지역 지정	기개발지

개발 행위 규제 등의 제재 수단으로의 목적 보다는 지속 가능한 국토의 이용을 유도 할 수 있는 평가등급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 평가체계를 객관적 평가 위주의 등급체계로 개선하여 등급별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발과 보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환경 용도지역의 지정과 해지, 개발행위 허가 등을 위해 평가 등급 마련을 위해서 더욱 현실적인 평가 지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2 지도 활용 및 운영 근거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구축 및 갱신되고 있지만(표 2 참조), 지도의 활용 법적 근거 또는 시스템 운영의 근거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과 작성 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지침’ 개정 고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의 제정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 물 환경과 대기오염 정보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 및 공유되어야 하며, 현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내에서 환경보전과 관리 측면의 환경공간정보 제공과 국토환경 이용과 관련한 통합적 분석 기능을 제공 중에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간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등 국토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개발 사업 수립 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역할을 강조해야한다. 자연환경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환경 등 폭 넓은 매체의 환경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경정보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의 개편 또한 사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환경부, ‘2019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운영 사업 최종 보고서’, 2019년.

[표 2]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

<p><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